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 입법 동향

Vol. 82 (2022. 10. 3 ~ 10. 7)

DR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IP	①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각본 등 영상물 저작자가 제작사 등 타인에게 IP를 양도한 경우에도 콘텐츠를 최종 제공하는 방송사·극장·OTT 등을 대상으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기업송무	②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 일몰(자동 폐지) 기한 삭제.
국회 계류안	기업송무	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대형 CP가 망 이용 대가를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 등을 받도록 함 등.
공포 법령	국제거래	④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 수출입자가 포괄허가 등을 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전체기간의 수출입량뿐만 아니라 기간을 나누어서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입법/ 행정예고	공정거래	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정유사가 각 지역에 판매한 석유 제품의 가격과 판매량이 보고 항목에 추가 및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도매가격을 시도별로 공개하도록 함.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성일종 (국민의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 '기생충' 의 아카데미상 수상 및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의 에미상 수상 등 우리나라 영상콘텐츠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우리나라 영화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저작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 복제, 배포, 방송, 전송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영상제작사 등에 비해 창작자인 저작자의 협상력이나 정보가 부족함을 고려하였을 때 영상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창작자들은 영상저작물 이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창작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최근 유럽은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을 마련하여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간행물 등을 재사용하여 획득한 수익에 대한 대가를 저작자에게 분배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며, 남미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도 이미 영상물 이용에 따라 영상저작물 저작자에게 일정 부분 대가가 지급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보상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 보호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안 제100조의2 신설 등).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U2T0O9K1B5A1S0D4R4Q3V5H1Z4F4	아시아경제 22.09.27. 국회 "OTT도 음악처럼 시청할 때마다 감독·작가에 보상해야"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92715394553841	22.09.19.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주파수를 할당받지 아니한 사업자도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의무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규제의 일몰기한은 2022년 9월 22일임. 그런데, 도매제공의무가 사라질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 여부나 제반 조건의 결정에 우위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특히 자본력과 협상력이 낮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저하와 이로 인한 중장기적 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도매제공의무의 일몰제도를 폐지하여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담보함으로써 시장경쟁 촉진 및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35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V2L0R9C2D2K1G4I5X9I0N7N3P6F0	아시아경제 22.09.29. 알뜰폰 연 1.4조 통신비 인하 효과…도매의무제공제도 유지 법안 발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92914070030257	22.09.29. 제안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김영식 (국민의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서비스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발생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들이 국내 인터넷망 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이 구축한 망을 이용하며 자사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일반 콘텐츠제공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망 투자 및 확충 유인이 감소하고 정상적인 망 구축에 지장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인터넷망 이용 환경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의 판결(2020가합533643판결)을 통해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하며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 이러한 망 이용을 통해 제공받는 인터넷접속역무는 유상이라는 점이 확인된 바 있음. 이에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접속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망의 구성 및 트래픽 양에 비추어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국내 망 이용 환경의 정당한 질서를 바로잡고, 다른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6호 신설).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N1P0U7R1H4H1Q0U0G3N1M7Y8R9I1	매일경제 22.10.03. 트위치, 한국서만 동영상 화질 낮춘다…망사용료 논의에 반발 https://www.mk.co.kr/news/it/view/2022/10/871294/	**21. 07.15. 제안** **21.11.09.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22.04.21. 소위 상정**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환경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포괄수출* 또는 포괄수입**을 하는 폐기물 수출업자·수입업자의 폐기물의 적정한 수출입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폐기물 수출입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포괄수출계획서 또는 포괄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전체 기간의 폐기물에 대하여 보증금 예탁 또는 수출입 보증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 수출입예정월의 폐기물에 대해서만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후 폐기물을 수출입할 때마다 해당 폐기물에 대한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포괄수출: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것 * 포괄수입: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가 두 번 이상 수입하는 것 출처: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헤럴드경제 22.09.20. 27일부터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부담 줄인다…가입방식 개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920000454	22.09.27. 일부개정 22.09.27. 시행

4. 입법/행정 예고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정부는 러·우 전쟁 이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민생 안정을 위해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였으나,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음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분이 석유정제업자(정유사), 주유소 등 업계 마진으로 일부 흡수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내 석유 가격 보고·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석유정제업자(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편익을 개선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석유정제업자가 판매한 석유제품의 판매대상(일반대리점, 주유소 등) 및 지역별 판매가격 공개(제42조의2제3항제1호 및 별표 5 개정) 나. 국내 석유정제업자의 주·월단위 지역별 판매량, 판매단가 등을 보고 범위에 추가(별표 4 개정) 다. '11.7월 이후 폐지된 '등유 1호·2호'를 '등유'로 수정하여 조문 자구수정(별표 4, 별표 5 개정) 출처: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0112?pageIndex=3	세계일보 22.09.28. 주유소 도매가 공개… '들쑥날쑥' 기름값 잡는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927515131	22.09.27. ~ 22.11.09.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헤럴드경제][기사] 이정식 "중대재해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10월 중 로드맵 마련" (2022.10.0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005000183

주요내용 정부가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10월 중에 마련함. 상시 구인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조선업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꾸려 '고용 여건 개선에서 채용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하여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며 "현재 노사,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장 실태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함.

[헤럴드경제][기사] 현직 검사장 "중대재해법 위헌성 크다" (2022.10.0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005000491

주요내용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위헌성에 대한 현직 검사장의 공개 비판이 나온 것으로 파악됨. 위 검사장은 중대재해 관련 세미나 발표에서 현행 중대재해법이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음.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할 시행령에서조차 이 법령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현재 경영책임자들은 '무엇을 준수해야 위법이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이러한 법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은 법 제정 당시부터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계속돼 왔는데, 다만,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한 현직 검사장의 공개 비판은 이례적임.

[한국경제][기사] 중대재해법 시행 후…연간 GDP 4조·일자리 4만개 줄었다 (2022.10.04.)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0044093i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4조7000억원이 감소하고 일자리 4만 1000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 규정을 바꾸고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청(가칭)을 설립해야한다는 제언. 분석 결과 중대재해법 도입(지난 1월 27일) 전 대비, 도입 후 건설기업의 경영리스크(부도위험)는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중대재해법이 도입되면서 경영자의 형사처벌 위험이 증가하고 소송 비용이 증대됐으며 공사 지연 손실 등이 발생했기 때문. 이에 따라 실질GDP는 0.26%(4.7조원), 총일자리는 0.15%(4.1만개)감소했고 총실질자본이 0.43%(2.4조원), 실질설비투자는 0.43%(0.7조원), 총실지소비가 0.34%(4조원)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됨.

[연합뉴스][기사] 중대재해법 갑론을박…"中企 대다수 찬성" vs "전면 개정해야" (2022.10.04.)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4060300003?input=1195m

주요내용 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두고 견해가 엇갈림. 일각에서 중소기업 대다수가 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편에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재단법인 경청은 연 매출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1천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4%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4일 밝힘. 찬성 의견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하도급 업체 등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44.7%)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사업장 내 안전의 엄격한 관리 및 안전보건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22.5%)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음. 반면 반대 의견으로는 '법 준수를 위한 예산·전문인력·전담조직 확보의 어려움'(30.9%), '고의나 과실이 없는 재해도 책임자 처벌이 과도함'(25.3%) 등의 순이었음.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박민재
공동센터장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17
E : parkmj@draju.com



최원혁
변호사

T : 02-3016-8737
E : whchoi@draju.com



권기원
공동센터장

T : 02-3016-8743
E : gwkwon@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IP팀



최종선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88
E : jschoi@draju.com

기업송무그룹



김수형
파트너변호사

T : 02-563-2900
E : shkim@draju.com

국제거래팀



정지웅
외국변호사

T : 02-3456-7644
E : jucheong@draju.com

공정거래그룹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49
E : smkoo@draju.com

중대재해자문그룹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2@draju.com